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 법령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데 있어 대부분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체계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개의 법률과 1개의 시행령 및 4개의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규칙으로서 99개의 고시, 12개의 예규, 3개의 훈령 및 각종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 표준 등이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설정하고 그 시행 근거를 확보하여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 및 사업수행의 근거를 설정한 것으로서 9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 사항, 즉 제도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설정한 것으로서 10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크게 법에 부속된 시행규칙과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 등 4개의 규칙으로 구분되는 바, 이들은 모두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고시, 예규 및 훈령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검사·검정 등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을 널리 알리어 활용할 수 있는 수치적·표준적 내용인 고시가 있고, 정부와 실시기관 및 의무대상자 간에 일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절차 등을 모델화하여 조문형식으로 규정화한 내용인 예규가 있으며, 상급기관, 즉 노동부 장관이 하급기관, 즉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어떤 업무 수행을 위한 훈시·지침 등을 시달할 때 조문의 형식으로 알리는 내용인 훈령이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주요 내용

가. 산업재해예방 활동의 주요 내용 요청권

법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 등]

-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제2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 제2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대표는 다음 사항에 관해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3)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4) 위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에 관한 사항
-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7) 안전보건진단 결과
- (8)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내용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 내용 이행

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의무

법 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 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라.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법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 구체적 사항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명하고 있다.

마. 작업중지시 보고의무

법 제26조[작업중지 등] 2항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준수 의무

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5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 사업주가 행하는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사. 건강진단의무

법 제43조[건강진단] 3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 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 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아. 역학조사 협조

법 제43조의2[역학조사] 1항, 2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실시하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적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 건강관리수첩의 양도·대여

법 제44조[건강관리수첩] 2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등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한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

차. 공정안전보고서 준수 의무

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5항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카. 안전보건개선계획 준수 의무

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4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및 시설 기타의 사항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에 대해 수립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타.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근로자 참여권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및 회의 참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심의, 작업환경측정시 입회, 공정

안전보고서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심의권,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활동 등이 있으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도(근로자가 자신 뿐만 아니라 동료의 신체 또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 장치로 국가기관인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그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는 근로자의 역할로서 가장 가치 있고 확고한 의지가 부여된 권리이다.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내용

가. 유해·위험작업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 등] 2항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받고 착용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양중기 사용작업

규칙 제102조[신호] 2항

근로자는 양중기사용 작업에 필요한 일정한 신호방법 및 신호를 사업주가 정하여 준수토록 할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양중기 운전작업

규칙 제103조[운전위치로부터의 이탈금지] 2항

양중기의 운전자는 운전 도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작업

규칙 제175조[제한속도의 지정] 2항

차량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사업주가 작

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규칙 제177조[접촉방지] 2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치한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규칙 제181조[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때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포크 및 버킷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들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마.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작업

규칙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 2항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사업주가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규칙 제222조[접촉의 방지] 2항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치한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규칙 제224조[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2항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때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버킷 · 디퍼 등의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 들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바. 향타기 · 향발기 운전작업

규칙 제245조[운전위치 이탈금지] 2항

향타기 또는 향발기의 운전자는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칙 제248조[신호]

운전자는 사업주가 신호하는 자와 신호방법을 정하고 향타기 또는 향발기의 운전작업을 하는 때에 당해 신호를 사용하도록 할 때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사. 채석작업

규칙 제435조[굴착기계 등의 유도]

굴착기계, 분할기계, 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 운전자는 사업주가 채석작업에 있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배치한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아. 화물취급 작업

규칙 제475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2항

화물 하적단을 쌓을 때에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고, 하적단을 헐어낼 때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된다.

4.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내용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03년 7월 12일 이전까지 최소한의 범상 의무로 열거하였으나 동시점에서 전면개정하면서 사업주 의무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전환시키면서 근로자 역할에 대해 뚜렷이 구체화시키지 않았다. 